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월
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

과세표준	2020년	2021년
1200만원 이하	6%	(좌동)
1200~4600만원 이하	15%	
4600~8800만원 이하	24%	
8800~1.5억원 이하	35%	
1.5~3억원 이하	38%	
3~5억원 이하	40%	
5~10억원 이하	42%	
10억원 초과(구간 신설)		10억원 초과부터 45%

화

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조정

연령	고령자 공제		장기보유 공제(변화없음)		공제한도	
	공제율		보유기간	공제율	2020년	2021년
	2020년	2021년				
60~65세 미만	10%	20%	5~10년 미만	20%	70%	80%
65~70세 미만	20%	30%	10~15년 미만	40%		
70세 이상	30%	40%	15년 이상	50%		



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

부양가족 공제

-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, 며느리, 사위, 삼촌, 외삼촌, 고모, 이모, 조카, 사촌,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
-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함. 특히,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·양도소득(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)이 있는 부모는 주의
-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함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- '20. 12. 31.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(세대원 포함)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안됨
-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안됨
-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음

연금계좌 세액공제

-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됨
-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됨
-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보험료 세액공제

-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(피보험자)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안됨



개정된 ISA 기준

가입대상	19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(소득증빙 불필요)
자산운용범위	기존 금융상품(예적금, 펀드)에 상장주식 추가
계약기간	3년 이상 자율, 만기 전 이익금 외원금 중도 인출 가능
납입한도 이월	연간 2000만원으로 전과 동일. 미납분 이월 가능해 최대 1억(5년) 가능